

행복100% 서대문!

---

홍제 · 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 설계공모지침서

---

2024. 3.



서대문구  
SEODAEMUN-GU

# 목 차

---

## I. 설계공모 규정

1. 사업개요 .....	3
2. 공모 일정 및 방법 .....	4
3. 작품제출 및 제출도서 작성기준 .....	7
4. 심사 .....	11
5.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14
6. 기타 .....	15

## II. 세부설계 지침

1. 계획 개요 .....	17
2. 대상지 개요 및 면적기준 .....	19
3. 세부 설계지침 .....	21
4. 용도별 설계지침 .....	26

III. 서 식 .....	35
----------------	----

# I

## 설계공모 규정

### 1. 사업개요

#### 가. 사업 목적

본 사업은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육아 및 보육 거점 기관(HUB)을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나아가 양육 친화적인 서대문구를 조성하고자 함.

#### 나. 설계 공모 목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며, 예술성·작품성·안전성을 갖춘 품격 높은 설계(안)를 선정하고자 하며 **일반설계 공모를 적용**한다.

#### 다. 사업(공모)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용역명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	
발주처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204일대 (홍은제13구역 정비사업내 내 필지)	필지는 홍은제13구역 정비사업 공사 중으로 공사 완료 시 부여될 예정 (2025년 예상)
용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638㎡	
건폐율	60%	
용적률	200%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설계자 의도에 따라 법정 한도 내에서 조정가능
예정공사비	<b>총9,275,000,000원</b> (건축공사 8,775,000,000원 / 인테리어공사 500,000,000원)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비용, 철거비를 포함한다.	VAT 포함
예정설계용역비	554,000,000원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각종 인증, 인테리어 설계 포함	VAT, 각종인증, 검토, 손해보험료 등 포함
예정설계기간	<b>착수일로부터 360일</b>	건축인허가 심의 각종 인증 업무 등 모두 포함

※ 각종 예비인증 수수료,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별도

※ 과업범위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 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 설계용역 과업내용 중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Design for Safety)'를 작성하고,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완료 포함

## 2. 공모 일정 및 방법

가. 설계 공모 방식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건축설계 공모 중 **일반설계 공모**를 적용

나. 설계 공모 추진일정

구분	일시	비고
시행공고	2024.3.18.(월)~ 2024.3.25.(월)	-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a href="https://project.seoul.go.kr">https://project.seoul.go.kr</a> ) - 서대문구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
현장설명	생략	- 설계공모지침 및 과업지시서로 같음
참가등록	2024.3.26.(화) 10:00~ 2024.3.27.(수) 17:00	-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a href="https://project.seoul.go.kr">https://project.seoul.go.kr</a> ) ※ 구비서류는 작품제출 시 제출
질의접수	2024.3.28.(목) 10:00~ 2024.3.29.(금) 17:00	-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a href="https://project.seoul.go.kr">https://project.seoul.go.kr</a> )
질의응답	2024.4.5.(금)	-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a href="https://project.seoul.go.kr">https://project.seoul.go.kr</a> )
작품(공모안)제출	2024.6.17.(월) 10:00~17:00마감	-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 <a href="https://project.seoul.go.kr">https://project.seoul.go.kr</a> ) 작품제출 후 접수확인증 지참하여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3층 가족정책과 (연희로 247) - 제출대상 : 참가등록 신청 업체 - 제출시간 : <b>도착시간 기준, 이후 접수 불가</b> ※ 온라인(설계공모 홈페이지), 방문제출 둘 다 필요하여 함 ※ 프로젝트서울 접수확인증 반드시 지참
작품심사	2024.6.28.(금)예정	-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작품심사 - 작품접수 및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당선작발표	2024.7.8.(월)예정	-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a href="https://project.seoul.go.kr">https://project.seoul.go.kr</a> ) - 서대문구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통해 게시

※ 상기 시간은 한국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상기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기간 중 추가정보 제공은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에 게재할 예정  
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지는 정비사업 구역 내 위치한 대지로 당선 이후 사업대지의 현황(도로 레벨 변경 등), 공간계획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다. 설계 공모 참가의 자격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공동이행방식 가능),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2) 설계공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 할 수 없다.  
※ 작품제출(구비서류 제출)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 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한다.
- 3) 공동응모 시 동 응모자 모두 "1) 항" 및 "2) 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초과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참가등록 이후 응모사 변경 불가(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소지자 중 본 공모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1)항의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하며, 당선 시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사무소가 된다.
-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 자문,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한 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 혹은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과 가족, 기타 공모 관계자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6) 당선자는 계약 시 건축분야를 바탕으로, 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 등 관계 전문기술 분야의 중간 및 실시 설계를 업무영역에 포함하여 각 분야의 관계 전문 기술자와 공동도급계약을 통해 자격 및 면허를 보완하고, 계약상의 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국내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 요건을 충족 시에는 예외
- 7)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 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한다.

#### 라. 현장설명

별도 현장설명회 없음(설계공모 지침으로 같음)

#### 마. 참가등록

- 1) 등록기간 : 2024.3.26.(화) 10:00 ~ 2024.3.27.(수) 17:00
- 2) 접수방법 :
  - 웹사이트(<http://project.seoul.go.kr>)를 통해서만 참가 등록이 가능하다.(우편, FAX 접수 불가)
  -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로그인) → Competitions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등록하기] 후, 웹사이트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작성해야 등록이 완료되며, 이때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이하 'PIN 번호')를 통해 공모 기간 동안 참가자 및 제출자료를 식별한다.  
※ 참가등록 기간 내 정보변경은 가능하며, 만료 후에는 일체 수정 불가  
※ 지정된 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바. 질의접수 및 응답

- 1) 질의접수일 : 2024.3.28.(목) 10:00 ~ 2024.3.29.(금) 17:00

2) 질의방법 : 해당기간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 질의내용 등록

3) 질의응답 회신

(1) 일 시 : 2024.4.5.(금) 18:00 까지

(2) 방 법 :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 일괄 게재

4) 유의사항

(1) 질의자격은 참가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한 자에 한하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는 질의를 받지 아니한다.

(2) 질의서에는 질의자(응모대표자)의 회사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기재한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별 회신하지 않는다.

(4)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5) 질의서는 기한 내 접수 완료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6)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내용이 공모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 사. 제공자료

1) 본 설계공모를 위해 필요한 자료(설계공모 공고문, 설계공모지침서, 설계과업내용서)는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와 서대문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2) 현황측량도,단지배치도,지반조사서 자료는 설계공모 홈페이지 참가등록자에 한해, 참가등록 종료 이후 해당 홈페이지 [공모전 참가자 참고자료]를 통해 제공 예정

### 3. 작품제출 및 제출도서 작성기준

#### 가. 작품제출 : 온라인, 오프라인(방문) 모두 제출완료 하여야 함

##### 1) 제출장소

- (1) 방문 : 서대문구청 제3별관 3층 가족정책과 (연희로 247)
- (2) 온라인 :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프로젝트서울 (<https://project.seoul.go.kr>)  
 ※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에 온라인 접수 후 접수확인증을 지참하여  
 현장방문 제출(하단 참가 구비서류 및 제출도서 모두 제출)

##### 2) 제출일자: 2024.6.17.(월) 10:00 ~ 17:00 (시간엄수)

##### 3) 제출서류

###### (1)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 온라인 접수확인증

###### (2) 설계공모 참가 구비서류

연번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
1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서식1
2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건축사자격증 사본 각1부	공동응모의 경우 각 사별 제출 '원본대조필' 확인필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공동응모의 경우 각 사별 제출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공동응모의 경우 각 사별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5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2
6	대표자선임계		서식3
7	공동수급협정서		서식4
8	외국건축사 면허증(해당시)	자격증 및 자격취득신고 확인증,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9	청렴서약서	공동응모의 경우 각 사별 제출	서식5
10	설계공모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축사 협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원본 또는 사본 1부 제출(원본대조필)	공동응모의 경우 각 사별 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필	
11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식6
12	보안각서		서식12
13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13

※ 구비서류는 작품제출 시 원본 종이서류 및 PDF(스캔하여1개파일) 형식으로 둘 다 제출

- 위 1~13까지의 해당 되는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 후 1개의 PDF파일로 작성하여,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및 USB에 모두 제출

※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는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에 대표자 인장 날인

#### 4) 제출도서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설계도면 온라인 작품제출 필할 것

(1) 설계도면(설계설명서 포함) : 10부 [출력물-규격: A3(가로 420mm×세로 297mm)]

(2) USB 1세트 : 작성방법 아래 참고

(3)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봉투 1매

-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류 (A4에 작성 후, 별도 표기가 없는 정부규격봉투 2호에 밀봉 후 봉투

표지에 PIN번호 기재 후 제출)

#### 나. 제출도서의 익명성

- 1) 도서의 익명성 확보는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전 설계공모 기간 동안 적용된다.
    - (1)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봉투'는 별도 표기가 없는 정부 규격봉투 2호(소봉투)에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류(A4)를 넣어 봉인한 후, 제출도서(설계도면, USB 등)와 함께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 (2) 참가자는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등록 시 전산으로 자동 부여받은 알파벳 2자와 아라비아 숫자 5자로 구성된 **PIN번호를 USB 몸체, 정부규격봉투 2호 표지, 제출도서 백색종이 포장지에만 표기한다.**
    - (3) 사무소명, 응모자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 (4) 심사번호 기재란에는 발주자가 익명의 심사번호를 재부여하여 익명 관리한다.
    - (5) 응모자는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 (6) 모든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 응모제출도서의 포장을 해체하여 심사번호를 부여할 때,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봉투'에도 제출도서와 동일한 심사번호를 기재하고 익명 관리하며, 밀봉된 봉투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결과 확정 시 개봉한다.

#### 다. 제출도서의 작성

##### 1) 공통사항

- (1) 레벨,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현한다. (\*규정된 축척이 없을 시 임의로 정하되, 제출 도서의 규격을 고려하여 가독성이 높은 축척으로 작성하며, 같은 유형의 도면끼리는 통일한다.)
- (2) 모든 제출 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표현은 무채색(백색, 회색, 흑색)으로 한다, 단, 3차원 이미지에 한하여 색채 표현이 가능하며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렌더링한 조감도, 상세한 설계도면, 모형 등은 제출 도서에서 원칙적 제외
  - 과제 설명의 보안을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 사례의 사진과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공모 안에 포함할 수 있다.
  - 렌더링이란 사진과 같은 효과를 위해 빛의 그라데이션 효과 등을 3차원 모델링 이미지에 부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은 할 수 없다.
  - 도서에 포함된 3차원 이미지 각각에 대하여 렌더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림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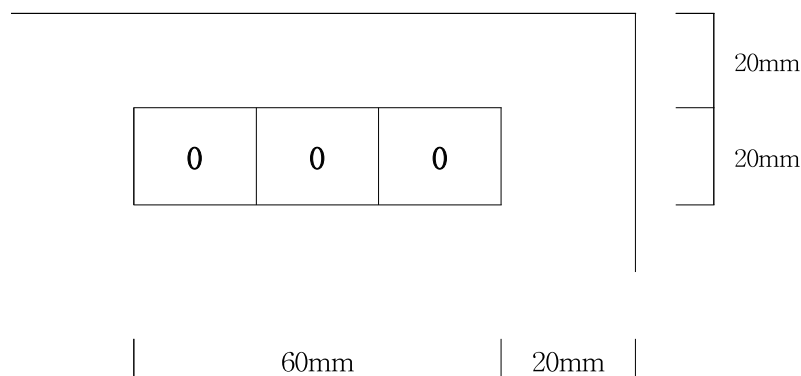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 (3)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 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 (4) 모든 제출 도서의 글씨체는 맑은고딕체를 사용하며 모든 응모 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실격처리한다.
- (5) 모든 제출 도서의 재질은 표지는 스노우지(120g/m<sup>2</sup>), 내지는 백상지(100g/m<sup>2</sup>)를 사용한다.
- (6)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7)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때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 (8) 제출 도서 내용물의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표기한다. (틀린표기: -1-, ①)
- (9) 쪽 번호는 단면 인쇄 기준으로 표지 및 뒤표지는 제외하고, 간지에는 표시한다.  
\*모든 제출 도서는 단면 인쇄로 한다. (양면인쇄 시 2쪽으로 간주, 간지 사용 시 1쪽으로 간주)
- (10) 모든 제출 도서에 표현되는 도면은 아래에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배치도 : 시설,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의 배치계획 및 지반 계획고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이격거리를 명기(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각종 이격거리 등)하고, 지하구조물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 지하층~지상1층 평면도 : 경사지임을 고려하여, 지하층에서 지상1층까지 옥외시설과의 관계 및 접근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 상황을 표현한다. (지하층은 해당층에 주차장, 거실이 있을 경우 표현)
  - 실명과 면적은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 축척은 각 도면에 정확히 표현한다.
- (11)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 (12) 조감도, 투시도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한다.

## 2) 설계도면(설계설명서 포함)

- (1) 규 격 : A3(가로420mm×세로297mm) 크기로 장변이 가로가 되도록 하고, 접착제로 철하여 제출 (단변 좌철), **10부** ※ 스프링, 클립, 스테이플러(종이테이프 검정색) 등으로 제본 금지
- (2) 표 지 :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도면"과 우측 상단에 심사번호 기재를 위한 공란만 표기
  - 테두리, 문자 및 기타 기호 등 표기 금지(응모자를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됨)
  - 글자 크기 48포인트, 글씨체 맑은 고딕, 가로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



- (3) 분 량 : 표지 및 간지 포함 20쪽 이내 (단면 인쇄만 인정한다.)

(4) 지 질 : 표지 : 스노우지 (120g/m<sup>2</sup>), 내지 : 백상지(100g/m<sup>2</sup>) (코팅지 등 사용 불가)

(5) 작성내용 및 작성 순서

- 작성내용

① 기본도면 : 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②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표현

③ 그 외 설계 의도

- 작성 순서

① 표지

② 목차

③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투시도·조감도 포함) 표현

④ 기본계획 방향

⑤ 설계개요[건축개요(서식7),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서식8)]

⑥ 대지 현황 분석, 배치계획

⑦ 기본도면

※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지하→지상 순), 입면도(4면 이상), 단면도(중·횡단면도, X축→Y축순)  
분야별 도면 순으로 작성

⑧ 건축 계획, 조경, 외부공간계획, 주차계획도(보행 및 차량, 주차 포함 교통흐름도), 피난 및 비상 차량 동선계획

⑨ 친환경,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계획(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공급비율 산정하여 기재)

⑩ 관련 법규검토서 (서식9)

⑪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10)

⑫ 가중평균지표면 산정도(필수)

※ 가중평균지표면 산정시 제공파일 ' 단지배치도'의 레벨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 설계공모 홈페이지 참가등록자에 한해,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단지배치도' 자료 제공 예정

⑬ 추가 : 기타 설계자가 나타내고 싶은 도면 및 다이어그램 등

3) USB 1SET (USB 외부 몸체 자체에 PIN번호 표기)

(1) 구비(제출)서류

① 파일형식 : PDF 파일 1개 \*모든 구비(제출)서류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 PDF파일로 제출

② 파일이름 : PIN번호\_01\_구비(제출)서류

(2) 설계도면(전체)

① 파일형식 : PDF 파일 1개, 캐드원본파일 1개

② 파일이름: PIN번호\_02\_설계도면(전체)

(3) 3차원 모델링 작업파일

① 파일형식 : 원본 프로그램 파일, JPG 등 그림 파일 각1개

② 파일이름 : PIN번호\_03\_3D Model

※ 검토를 위한 캐드 원본 파일(면적산출 근거, **2010버전 이하**) 및 투시도, 조감도 원본 파일 제출

※ JPG파일은 원본 크기로 출력 시 해상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최대 300dpi로 제출하며, 파일당 5MB 이하로 제출한다.

※ 공모안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은 참가자가 직접 생산(촬영)한 것이며, 제출되는 자료 파일은 설계도면(설계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 4) 주의사항

- (1)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2) 설계도면(설계설명서)의 규격, 쪽수, 작성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
- (3) **모든 제출물은 마감시간 2024.6.17.(월) 17:00 전에 온라인 제출 및 방문제출(도착시간 기준 접수)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참가자는 작품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도록 한다.
- (4) 온라인 제출 및 방문제출 둘 중 한가지라도 미완수 될 경우 제출시간 미준수로 판단하여 접수 불가
- (5) 공모참가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인지하시기 바람(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4. 심 사

### 가. 심사 시 불이익 처분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불이익 세부 기준에 따라 설계심사공모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격·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적용방법

- (1)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작품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감점 기준에 의거 사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때 심사위원회에서는 감점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2) 기타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해석의 차이는 다음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 2) 처분기준

- (1) **실격 대상** : 발주처가 설계 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의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 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대규모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건축 규모 초과 및 설계 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위반하여 대규모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제출 도서의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 불공정행위(심사위원과 사전 접촉하여 응모작을 설명하는 행위 등)
  - 타공모전에 출품되었거나, 이미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품(본 공모전 수상 이후라도 입상결과를 취소 할 수 있음)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투시도, 조감도) 표현 위반**
- (2) 감점 기준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점 범위 내 발주처에서 감점 사항을 작성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구 분	항 목	벌칙규정	심사규정
법규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2점/건당	실격 또는 감점 (10점 이내)을 사안의 중대 여부에 따라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지침 위반	연면적 및 소요공사비 초과	-3점	
	지질, 규격, 제본방법 미준수	-1점/도서종류별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1점/매당	
	기타 지침상의 도서작성 기준 위반	-0.5점/도서종류별	

#### 나. 심사위원회 운영

- 1) 심사일시 : 2024.6.28.(금) 예정
- 2)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건축계획·설계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 3) 심사위원회 명단

(가나다 순)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고창우	(주)티섹구조엔지니어링	본위원
2	신민재	AnlStudio건축사사무소	본위원
3	윤영선	수오건축사사무소	본위원
4	이광환	(주)해안건축	본위원
5	이종환	이종환 건축사사무소	본위원
6	유지아	포스코A&C	예비위원
7	최혜진	오즈앤엔즈 건축사사무소	예비위원

※ 심사위원의 제척은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제5항에 따라 제척하며, 제척 시 예비 심사위원이 본 심사위원으로 대체된다.

#### 4) 심사위원회 운영

- (1)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 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2) 심사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 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설계 공모 참가자가 열람하고자 할 경우 7일 이내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취록(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 (4) 설계 공모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5) 발주처 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6) 심사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 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공모 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 외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7)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 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8)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관련 자료를 발주처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9) 심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6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발주처 등에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심사의 절차 및 기준

### 1) 심사방법

- 심사 시 발주부서의 법규위반, 지침위반 사항등을 보고 받고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작품토론 및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 다수의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당선작 및 입상작들을 선정한다.
- 심사위원은 당선작에 대한 평가사유서와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설계공모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는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로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취를 하며, 당선작 발표 후 심사표를 함께 공개 한다.
  - ※ 녹화, 녹취 공개의 경우 열람 신청 후, 지정된 장소에서 볼 수 있다.
  - ※ (필요시) 발표 일시와 장소는 발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2) 작품 평가 기준

- 심사 기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채점제로 진행할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표와 같으나 세부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심사 평가 기준\_예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총100점)
계획 방향 및 개념	- 주변과 어울리는 건축물 계획과 공공건축으로서 주변을 고려한 계획 방향 및 개념	20점
배치계획 및 조경계획	- 대규모 공동주택 인접지로 저층부는 휴먼스케일과 주변의 도시맥락을 고려한 배치계획의 방향 및 개념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계획의 독창성 및 혁신성	20점
건축계획	- 건축물의 건축 계획 개념, <b>운영자가 다른 2개의 시설이 입주함에 따른 동선, 평면계획의 합리성</b> - 사용자를 고려한 층고 계획 및 입단면 계획 - <b>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b>	30점
친환경 및 기술 계획	- 탄소 제로, 에너지 효율성 등 친환경성 - 공사비용을 고려한 디자인의 경제성 - 건물구조의 안정성 및 공법의 효율성 - 친환경 에너지 사용 계획의 적절성(예상 사용량 표기)	30점

※ 투표제의 경우 상기 심사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심사함 (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배점기준 등 조정 가능)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위 심사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5.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가. 심사결과 발표

당선작·입상작 및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를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발표일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나. 입상작의 종류 및 보상

#### 1) 입상작의 종류

결 과	구 분		지 침	보 상
	참가업체 수	보상대상 수		
당선작	-	-		설계권, 설계의도구현권
입상작	2개 이하	1	보상 예산의 1/ 3	1순위 : 18,466천원
	3개	2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1순위 : 22,160천원 2순위 : 16,620천원
	4개	3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1순위 : 22,160천원 2순위 : 16,620천원 3순위 : 11,080천원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보상 예산의 1/10	1순위 : 22,160천원 2순위 : 16,620천원 3순위 : 11,080천원 4순위 : 5,540천원

※ 실격 작품은 설계비 보상에서 제외하며, 작품 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6. 기 타

### 가. 당선자의 의무 및 설계 계약

- 1)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과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당선자의 설계 의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2)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처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당선자는 이 지침서와 “과업내용서”를 준수해 설계하여야 한다.
- 4)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 5) 당선자는 사후설계(설계자 의도구현)를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선 이후 사업대지의 현황, 공간 계획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6) 설계의도 구현에 따른 비용은 설계의도 구현 대가요율(안)에 따르며, 산정된 대가에 따라 공사 발주시점에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한다.
- 7) 당선자는 설계도면 납품 이후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시공·유지관리 되도록 확인·해석·자문하여야 한다.

###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 1) 응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 2) 응모작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응모 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한다. 다만, 발주처는 참가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 사업(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다. 기본 및 실시 설계권 차점자 부여

당선자의 설계자가 자의 등의 사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수행이 불가능(포기)할 경우 차점자(우수작 설계자)에게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점자의 기수령 보상은 반환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본 사업이 취소 등이 되었을 때는 설계계약자와 타절 등이 상호간 협의에 의해 진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된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의에 의해 정산할 수 있다.

#### 라. 작품 반환

- 1)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고 발주기관에서 보관한다.
- 2) 당선작 이외의 응모 작품의 반환은 입상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 3) 반환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처가 임의로 처리하며, 이러한 발주처의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마. 유의 사항

- 1)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 2) 응모자는 모든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3) 입상자는 입상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여야 하며, 상기 기간이 지나간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당선작은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시 각종 심의, 자문 및 협의 결과에 따라 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발주처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바. 기타 설계 공모 및 설계 관련 지침

- 1) 본 설계 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일 때 재공고 한다.
- 2)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일 때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 3)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설계 공모 진행 여부 및 공모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4)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처 및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으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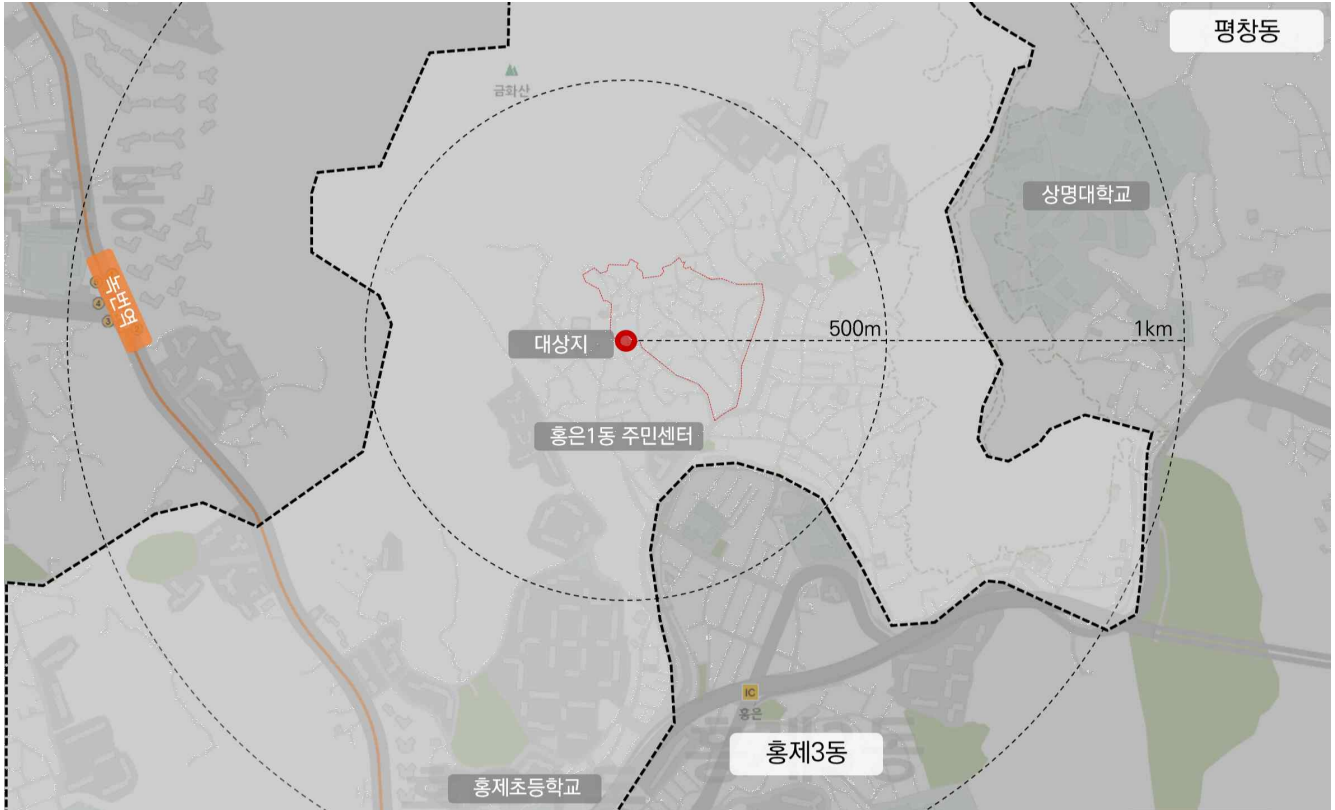
## II

# 세부설계지침

### 1. 계획 개요

#### 가. 계획 범위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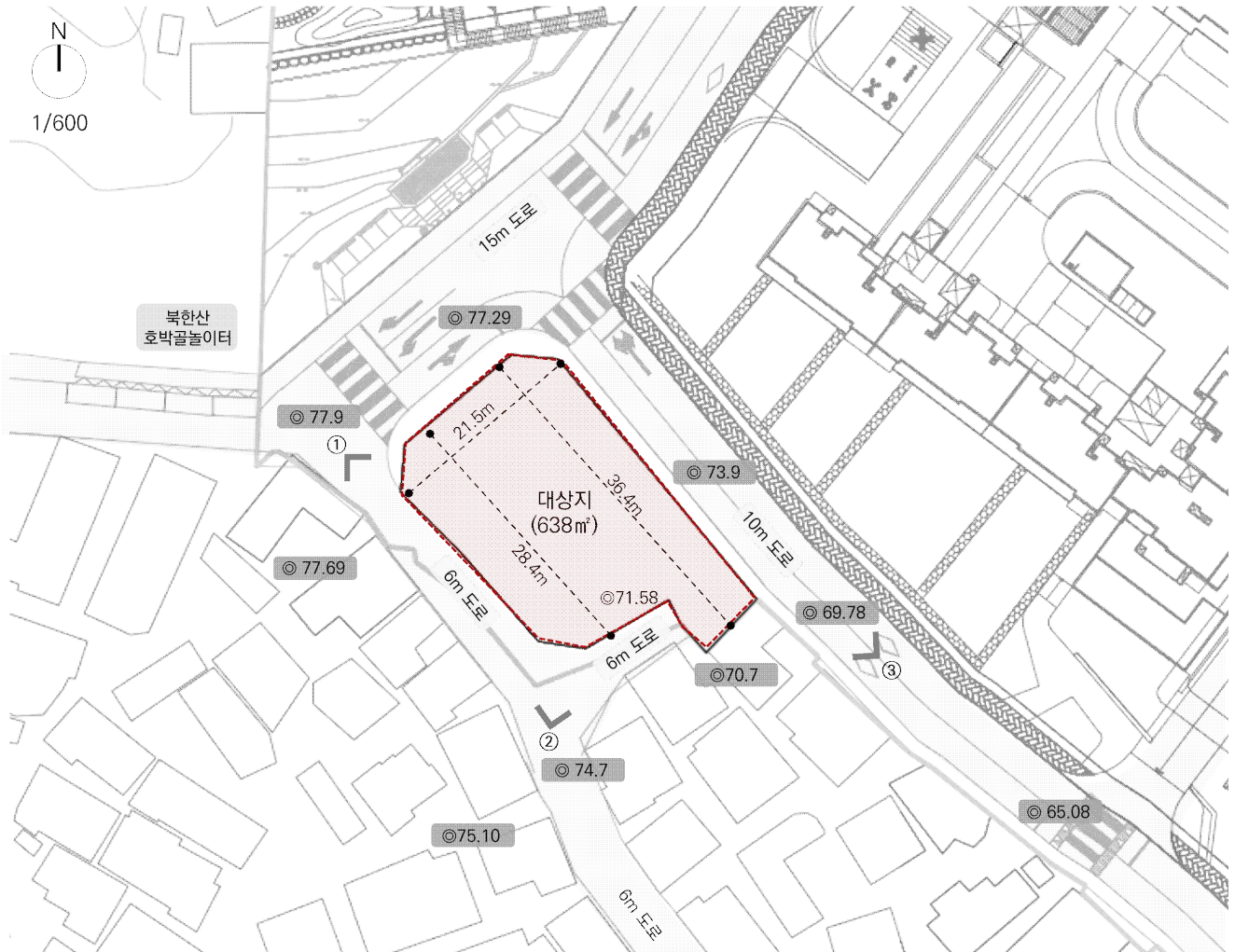
1)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204 외 필지 일원이다.



#### 2) 주변 현황



-사업대상지 주변 현황-



-사업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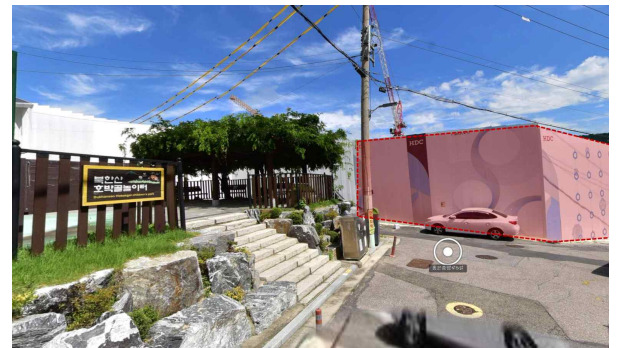
① 홍은중앙로5길에서 대상지 서측을 바라본 모습



② 홍은중앙로5길에서 대상지 남측을 바라본 모습



③ 홍은중앙로7길에서 대상지 동측을 바라본 모습



④ 북한산호박골놀이터에서 바라본 대상지

- (1) 대상지는 홍은제1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지 내에 위치한 대지로 현재 공사중이며, 홍은제13구역 정비사업 준공시 지번이 부여될 예정임.
- (2) 대상지의 고저차는 남북방향으로 약 7m 차이가 나는 경사지에 위치함.
- (3) 북측 15m, 동측 10m 도로는 현재 조성중(2024년 조성 예정)이며 서측으로 6m도로가 있음.  
\* 대상지가 재정비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향후 도로 레벨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설계에 응하여야 함

3) 계획 및 설계의 주안점

- (1) 본 사업은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육아·보육거점기관(HUB)을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나아가 양육친화적인 서대문구를 조성하고자 한다.
- (2) 대상지는 경사지에 위치하였으며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으로 접근, 외부공간, 프로그램의 조닝을 적절하게 계획한다. 대상지 주변의 도시적 맥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건축계획안을 제안 한다.
- (3)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총 연면적 1,875㎡ 기준으로 허용용적률 내에서 ±5% 계획한다. 기획된 공간 이외에 추가적인 공용공간을 제안할 수 있다.
- (4) 본 공모는 일반설계 공모이며, 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각종 예비인증(BF, 제로에너지 등) 등 관련 분야의 설계내용을 포함한다.

나. 예정공사비

- 1) 예정 공사비는 9,275백만원(건축공사 8,775백만원, 인테리어 공사비 500백만원)이며, 건축, 토목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철거, 본인증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2) 응모자는 추정 공사비의 금액 안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설명서에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대상지 개요 및 면적 기준

가. 대상지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용역명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204일대	홍은제13구역 정비사업 내 필지
용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구조	철근(철골)콘크리트조	설계의도에 따라 조정 가능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638㎡	
건폐율	60%	
용적률	200%	
건축규모	층수 :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1,875㎡(±5% 이내 조정) 지하면적 : 600㎡ 지상면적 : 1,275㎡	- 설계의도에 따라 층수와 연면적(허용 용적률내)에서 조정 가능 - 프로그램 면적은 ±10% 이내 조정 가능(단, 보육실 등 법적 면적 확보 할 것)
주차대수	법정주차 대수 이상으로 확보할 것. 장애인주차 1대	

나. 세부시설 면적표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 고
지하 2층	기계실/전기실	기계·전기실	95	
	창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창고	48	
		어린이집 창고	66	
	공용부	공용공간	55	계단, 홀 등
지하 2층 소계			264	
지하 1층	주차장	지하주차장	292	법정대수 이상 확보, 장애인주차 1대
	공용부	공용공간	44	계단, 홀 등
지하 1층 소계			336	
지상 1층	어린이집	현관	9	주출입구 근처에 유모차 대기공간 설치
		원장실	10	
		조리실	29	덤웨어터 포함
		교재교구실	16	
		유희홀	47	
		0세반	30	(법정) 6명X2.64=15.84㎡ *보육실 내부에 별도 세면대 설치
		1세반	31	(법정) 10명X2.64=26.40㎡
		2세반	45	(법정) 14명X2.64=36.96㎡
		교실 화장실	24	각 반당 8㎡
		공용공간	77	계단, 홀, 화장실 등
지상 1층 소계			318	
지상 2층	어린이집	홀	42	
		유희실	55	
		교사실	28	교사10~12명 보육실과 순환근무
		3세반	47	(법정) 15명X2.64=39.60㎡
		4,5세반	47	(법정) 15명X2.64=39.60㎡
		교실 화장실	16	각 반당 8㎡
		창고	14	
		공용공간	70	계단, 홀, 화장실에 세탁공간 포함 등
지상 2층 소계			319	
지상 3층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촬영스튜디오/회의실	35	보육교직원 및 부모 교육 온라인강의 촬영 장소 및 소규모 회의실로 병행사용
		사무실(탕비실 포함)	50	종사자 인력 6명 상주 예정
		상담실	9	특수교사의 발달검사 및 상담, 부모상담 진행 하므로 사무실 인근 조용한 곳에 배치
		장난감대여실	115	세척공간 포함(24㎡내외)
		공용공간	110	계단, 홀, 화장실, 유모차대기공간 (10대 이상) 등
지상 3층 소계			319	
지상 4층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프로그램실	70	접이식책상 배치를 통해 프로그램실과 강의실(30명 규모) 병행하여 사용 예정 *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체육활동 등), 부모교육,보육교직원 교육 등 진행
		영·유아열린육아방	139	영유아놀이방, 수유실, 화장실 포함 면적
		공용공간	110	계단, 홀, 화장실, 가족화장실 유모차대기공간(10대 이상) 등
지상 4층 소계			319	
지하 면적 합계			600	
지상 면적 합계			1,275	
연 면 적			1,875	연면적 : ±5% 각 프로그램별 : ±10% 조정 가능

### 3. 세부 설계지침

#### 가. 기본사항

- 1) 전체 공사비용이 예정공사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질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2) 건축물 외관, 옥외시설물·조경은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 하여야 하고, 인접 건축물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공사과정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3) 토공사 및 지하 기초공사 비용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경제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4) 건물구조는 공사 기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용도에 가장 적합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심의 등을 반영하여 설계자가 가장 좋은 방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 5) 실내·외 주요 마감재는 친환경 자재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 내구성이 좋으며 준공 후 자재의 대체구매 용이성을 자재 선정 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6)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은 내구성, 안전성, 기능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지진과 각종 재해 대응을 고려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 7) 영유아 보육시설임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리성에 가장 우선권을 두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등) [별표1],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서울시 안전 돌봄 어린이집 맞춤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한다,**  
**\*특히,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엄격하게 적용 할 것(모든 층에서 계단 또는 피난층을 통해 양방향 피난 가능하게 할 것)**
- 8) 각종 공공건축에 해당하는 법적 의무 인증(BF,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일반)
  - 제로 에너지건축물(4등급) 인증
  -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 설계안정성검토(DFS), 설계안전보건대장 등**\*용도와 면적에 해당하는 법적 의무인증은 모두 득할 것.**
- 9)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거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양 시설의 공간을 분리하며, 비상재해대비시설 또는 전기·가스·수도 계량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의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사용할 것(시설간 회계혼용 금지 규정 관련)
  - 어린이집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 다음의 기준 준수 필요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4)가 ②(ii)에 따라 설치된 경우로 한정)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동일한 층에 설치될 수 없음

- 10) 영유아의 특성 및 동선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11) **향후 유지관리를 이해 누수 등 하자 발생 위험이 있는 설계(디자인)은 지양해야 한다.**
- 12)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계획부터 BF인증을 고려한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유모차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나. 배치계획

- 1) 건물 배치는 소음, 조망, 기후 조건 등을 고려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실내에너지의 효율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배치를 계획한다.
- 2) 경사지에 위치한 대상지임으로 세밀한 레벨 계획을하여 보행과 차량동선간의 혼선이 없도록 계획한다. 가급적 주출입구는 15m도로에서 접근이 되도록 한다. 특히, 유모차로 방문하는 수요가 많으므로 무단차, 경사도를 고려한 주출입구 계획을 한다.
- 3) 주 이용자인 영유아들의 외부 활동공간(을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ex대지의 경사를 이용한 외부공간, 야외 놀이공간, 옥외 휴게정원 등) 야외 놀이공간은 어린이집 보육실과 인접하며 일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고 내부에서 직접 외부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한다. 적절한 수목으로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그늘막 설치를 고려한다.
- 4) 장래 이용 수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인원, 근무 인원 등 가변성 있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되어야 하며 차량 동선, 보행 동선, 주차계획 등이 합리적이고 보안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이어야 한다.
- 5) 차량 진출입구는 진출입 용이성 및 주변 교통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은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보행 연결구간에 차량 속도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6) 아름답고 기능적인 조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내외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휴게·녹지공간을 조성한다.
- 7) 실외놀이터 및 외부활동공간에는 식재 활용 또는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 8)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관리용 차량 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되어야 한다. 피난 및 비상차량 계획을 한다.
- 9) 어린이집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차량 승하차공간(1대)을 주출입구 인근에 계획한다.
- 10) 대상지 남측 막다른도로에 면한 부지(유휴공지) 활용방안에 대해 계획 및 제안한다.(ex. 등하원시 차량 통과도로, 보행 통과도로, 비상차량 진입, 휴게정원 등)
- 11) 대상지의 레벨차이가 크므로 보도 조성 및 출입구 설치에 대해서 가로공간(15m도로, 10m도로)에 대한 제안도 가능.

#### 다. 평면계획

- 1)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장·단변비)는 에너지 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 2) 시설별 영역은 상호 시설별 기능에 따라 분리와 연계를 고려하여 효율적 공간 계획이 되어야 한다.
- 3)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재난 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원활한 피난을 고려한다.

- 4)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주 출입구는 분리하여 계획한다. (코어는 공동 사용 가능하며, 적절한 영역별 분리 조치할 것)
- 5) 주 출입구와 각 층별 주출입 공간에는 유모차, 휠체어, 키보드 등의 보관 공간을 마련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층당 유모차 10대 이상 가능/ 엘리베이터 홀 또는 별도의 공간 계획할 것)
- 6) 채광, 환기(매달 공기질 측정 검사 시행-맞통풍 고려 등)에 유리하게 하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차계획, 미끄럼방지 바닥재, 벽 쿠션, 손 끼임 방지시설 등을 고려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시설(CCTV 등)을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한다.
- 8) 엘리베이터는 유모차 탑승을 고려하여 20인승 이상으로 계획한다.
- 9) 모든층에서 양방향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공간 확보한다.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설치기준', 202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건축법상 직통계단(2개소 이상 설치 대상시) 등 관련 법규 참조
- 10) BF인증 대상이므로, 계단 유효폭 및 출입구 등 주요 기준을 면밀히 검토·준수하여 향후 인증 시 문제가 없도록 검토 및 계획한다.
- 11)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아버지 육아 참여공간(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가족화장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지상 4층 영유아열린육아방 우선 고려)
- 12) 옥상을 활용하는 경우, 전층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입면 및 단면계획

- 1) 기능별 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동시에 상호 유기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수직, 수평 동선을 고려한다.
- 2) 각 실의 천정고는 공간적 쾌적성을 고려하되, 용도, 규모, 기능적으로 적절한 천정고를 산출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 3)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하게 계획한다. 또한, 저층부의 외장 재료와 놀이터의 놀이기구 재료는 영·유아들의 화상, 외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속재질의 재료는 지양하도록 한다.
- 4)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미관성을 갖추며 주변과 조화로운 건물이 되도록 한다.

마. 구조계획

- 1) 건물의 기능에 부합함과 동시에 지진 등 외력에 효율적인 구조계획으로 안전성, 경제성 및 건물의 구조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건물 골조의 구조미를 최대한 추구하도록 계획한다.
- 2)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3)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4) 지하수위에 따른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고, 지하 터파기 가시설은 도심의 인접 건축물의 침하 및 균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 적용하여야 한다.

#### 바. 동선 및 주차계획

- 1)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안 및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 2) 부지 경계에서 주요시설 접근을 위한 보행자용 통로(연접 보행로 포함)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과 노약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3) 장애인 등을 교통약자 우선 주차공간, 환경친화적 전기차 충전공간 등은 주차장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유도설비 등을 충분히 설치토록 계획한다.
- 4) **어린이집 원생의 원활하고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 학부모 차량 및 등원차량의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며 주차공간으로부터 안전하게 주 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식당 및 주방의 **자재 차량 동선** 및 소방용 비상차로를 검토할 때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계획하고 화재·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 진입용 동선을 계획한다.
- 5) **대상지의 주 출입구와 면한 도로는 단차가 없도록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동선을 구분한다.**

#### 사. 조경계획

- 1)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경계획이 되도록 하며, 각종 법률과 조례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 2) 시각적 즐거움과 휴게 공간 제공 및 공간의 특성화 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활동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조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 3) 건물과 녹지의 유기적인 관계가 되도록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결하고 위계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차폐·차음의 기능적인 부분도 고려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4) 주된 수목과 부차적인 부목, 일반적인 종목은 각 공간의 특성에 적합하게 조성하고, 시각적인 균형과 전체적인 경관이 어울려야 하며 옥상, 옥외정원 등 인공지반에 녹지를 계획할 경우, 토심이나 하중, 관수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아. 방법 및 보안계획

- 1) 야간 등 필요할 때 외부인 출입 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 2) 각 실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충분한 방법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3) 출입구 및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법 및 보안계획을 수립한다.**(어린이집과 육종분원 분리 설치 및 분리 관리체계 필요)**

#### 자.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계획

- 1)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경제적인 설계를 계획하고, 단면 계획 시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를 유지하고 사용에너지 절약 방안을 유도하여야 한다.
- 2)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1++등급 이상)으로 이에 대한 설계를 계획하며, BEMS 도입한다.
- 3) 건축물의 설계 시점부터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패시브 디자인을 고려한다.
- 4) 채광 및 환기 조망 등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고려한다.
- 5) **2024년~202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5% 이상** 준수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적용에 따라 디자인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성있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제안한다.
- 6) **제로에너지 4등급 인증을 위해 태양광패널(PV), BIPV 뿐만 아니라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을 제안하여,**



**입면 디자인 변경을 최소화한다. (연료전지 등을 적극 도입)**

**7)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공급 비율을 산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출서에 기재한다.**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건축허가 시점에 맞춰 우리 구 기준에 맞춰 설계에 반영한다.**

#### 차. 토목계획

- 1) 건물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며,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환경 친화적인 옥외환경조성 계획 고려한다.
- 2) 하수분류 방식은 관련 규정과 대지에 적합하고 주변 지역의 마을과 환경적인 피해가 없도록 계획
- 3) 고저차가 있는 대상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토목계획을 한다.
- 4) 해당 사업지는 정비사업 구역 내 위치한 대지로, 차후 도로 등 대지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맞춰 설계에 응하여야 한다.**
- 5) 지하층 계획 시 암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 카. 설비 계획

- 1) 건물의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계설비시스템을 도입하며, 건물의 LCC (Life Cycle Cost)를 감소시키는 설비 계획을 한다.
- 2) 냉난방설비를 완비하며 냉난방 열원공급 및 부대설비를 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층별, 실별로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경제적, 효율적인 자동제어 시스템 계획한다.
- 3) 기계실은 회전기기류의 소음과 진동 발생에 대한 방음, 방진설비와 통합관제가 가능하도록 원격제어 설비를 계획한다.
- 4) 소화설비는 관련 법령과 각 영역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 타. 전기·통신 설비 계획

- 1) 건물의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설비시스템을 도입하여 건물의 LCC(Life Cycle Cost)를 감소시키도록 계획한다.
- 2) 조명은 자연채광과 조화를 이루어 건물의 쾌적성을 높이며 에너지 소모의 절감 방안을 모색한다.
- 3) 어린이집에는 출입구에 인터폰을 설치하고 각 보육실과 연결되도록 한다.
- 4) 영유아 대상시설의 특성상, 안전을 고려하여 CCTV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파. 인테리어 계획

- 1)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테리어 계획을 한다.**
  - 각 층별 콘셉트 이미지, 조명계획(건축부문과 통합적인 계획), 색채 및 내부마감재 예시 등
- 2) 놀이공간, 유희실, 보육실 등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으로 연령별 발달과정, 교육, 학습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한다.**

## 4. 용도별 세부지침

### 가. 어린이집

- 1) **향후 원생 증가를 고려하여 공간 구성의 융통성 및 가변성을 확보**하며, 영유아 신체 발달 단계에 따른 적합한 면적의 보육실을 제공한다.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전용 실내면적 기준 영유아 1인당 4.29㎡, **서울시 권장 7㎡ 범위 내**
  - 보육실 면적 기준 영유아 1인당 2.64㎡(거실, 공동놀이실 면적 제외)
- 2) 놀이터와 접한 보육실은 직접 내외부를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 3) 보육실은 가능한 남쪽에 배치하고, **자연채광과 통풍이 용이하게 계획**하며, 각지지 않은 사각 형태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보육실 내 환기 문제로 프로젝트창호 지양)
- 4) 보육실 내 붙박이장 계획 시 교사의 개인사물함 등을 고려하고 연령별 보육실에 적합하도록 사물함, 이불 보관, 수납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5) 조리실은 조리기구 배치를 고려한 동선계획 및 가스·전원콘센트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덤웨이터와 같은 설비를 활용해 용이한 음식 운반을 고려한다.(식기세척기, 인덕션, 살균기 등 업소용 사용예정)
- 6) 화장실은 각 보육실 사이에 배치하며 만0세~만3세반은 화장실과 별도로 보육실 내에 세면대를 설치한다. (만2세~만5세 화장실은 칸막이 설치)
  - 복도를 통하지 않고 각 보육실과 화장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7)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분리하며, 교사, 학부모, 방문자 등의 성인용 화장실 사용 등 다목적용을 고려하여 1층 출입구에 근접하게 배치한다.
- 8) 유희실은 다양한 신체활동 기구와 설비를 위해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고 홀 및 복도 영역 간 가변적 융통성을 확보한다.
- 9) 원장실은 출입구와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출입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창을 설치한다.
- 11) 교사실은 교사의 휴게 및 업무 준비 공간으로 활용하며, 교사의 개인 사물함 등을 놓을 수 있고 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간으로 합리적으로 구성한다.
- 12) 세탁실은 교사용 화장실에 인접하면서 보육실과 분리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 13) 월 1회 이상 피난 훈련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안전한 피난 동선과 계획이 되도록 한다.
- 14) **어린이집은 원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선이 차단되거나, 방해될 수 있는 중정형 계획은 지양**한다.
- 15) 가급적 옥상놀이터 계획보다는 지상 옥외 놀이터 배치를 계획하며, 북측 약 50m 이내에 북한산 호박골놀이터와 연계되는 방안도 고려한다.
- 16) 어린이놀이터는 202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중 '놀이터 설치기준'에 따라 최대60(인) x 45% x 3.5㎡ =94.5㎡ 이상 설치한다.
- 17) 0세반은 학부모 출입이 빈번한 공간으로 주출입구 인근에 계획하며, 주출입구 인근에는 유모차 수납 공간을 조성한다. (10대 이상)
- 18) 영·유아 발달과정을 고려하고 성인보다 낮은 시야 위치인 것을 고려한 개구부(창호, 입면 등) 계획한다.

19) 위 사항 및 그 외 사항에 대해 아래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설계에 반영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등) [별표1]
-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울시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형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2021) 참고
-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어린이집, 2021)참고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 디자인 가이드라인(2013) 참고

20) 외부놀이터, 옥외공간 계획시 원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와 적정거리 이상 이격하며,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 1) 영유아열린육아방의 놀이공간은 다양한 놀이 경험을 체험,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설계 시 '2023년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 및 운영 매뉴얼'을 참조한다.
- 2) 각 층별 출입구에는 유모차와 킥보드, 휠체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한다. (층당 유모차 10대 이상)
- 3) 촬영스튜디오/회의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 교육 온라인강의 촬영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며, 촬영이 없을 경우 소규모 회의실로 병행 사용 예정이므로 이를 반영한다.
- 4) 프로그램실은 강의실(약30명 규모) 등 가변성이 있는 다목적홀의 기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모교육, 교직원교육 및 부모자녀 활동프로그램 등 운영 예정(접이식 책상 활용)
- 5) 상담실은 특수교사의 발달검사 및 상담, 부모상담을 진행하므로 사무실 인근 조용한 곳에 배치한다.
- 6) 장난감대여실은 세척공간을 함께 계획하여 세척·살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반납→세척→건조→보관→수납장]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 7) 세척실은 각종 소독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환기창을 계획한다.
- 8)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 충격완화를 고려한 내부 마감재를 선정한다.
- 9) 영유아열린육아방은 높은 천정고(4m이상 확보)로 계획하여 개방감과 자연광을 확보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옥상의 태양광패널, 옥상정원 등과 연계된 입체감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 10) 큰 장난감의 경우 차량을 이용률이 높으므로 차량을 이용한 반납 동선을 고려한다.
- 11) 그 외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484p.)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참조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시행령 제12조)
  - 건물구조, 화장실, 놀이기구,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게 설계 시공되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을 준용하고, 「건축법」, 「소방방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 12) 지상 4층 영유아놀이방 인접하여 가족화장실을 설치한다. (BF인증시 동시 사용 불가함으로 별도 계획한다.)

## <참조> 어린이집 세부 설계 가이드

※ 아래 세부 설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관련 법령과 기준에 준수하여 설계할 것

### 1) 어린이집 공간의 기능 및 특성

구분	공간 구성	기능 및 특성
보육 공간	영유아 보육실	-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 연령별 교육활동과 급·간식, 낮잠,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의 일상활동이 이루어짐
	영유아 화장실	- 손 씻기, 배변훈련 등 기본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 보육실 사이에 설치
	유희실 (도서관/ 실내놀이터)	- 영유아의 대근육활동, 각종 행사, 실외놀이 대체활동으로 활용되는 공간 - 그림책, 도서공간, 학부모 참여수업 등으로 활용되는 도서관
	실외놀이터	- 영유아의 신체활동 및 자연친화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관리 공간	원장실 (상담실,보건실 등)	- 원장실, 상담실, 보건실 등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통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사무, 상담, 양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 - 영유아와 학부모의 출입을 확인하고 관리(시창 설치)
	교사실	- 보육교사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거나 활동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
	교재교구실	- 연령별 혹은 주제나 영역별로 구분하여 영유아의 교재 및 교구를 보관
서비스 공간	조리실	- 영유아의 급·간식을 조리를 위한 공간 - 환기 및 이동편의성 고려
	성인화장실, 세탁실, 보일러실 등	- 교직원 및 학부모가 사용하는 화장실 (BF인증으로 남녀 장애인화장실을 활용함) - 세탁실은 수건이나 천 소재의 놀잇감을 세탁하는 공간임
	학부모 대기공간	- 영유아의 등·하원시 부모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현관	- 등원 시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으로 교사·학부모간의 간단한 소통이 이루어짐
	내·외부 복도	- 이동 및 유희, 도서코너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공간

## 2) 공간별 세부 설계 가이드

### 가. 공통사항

구분	세 부 내 용	
건축	의무	- 천장높이는 바닥 마감재까지 2.3m이상을 확보한다. - 보육정원 및 사업비를 고려한 적정 시설면적을 계획한다.
	권장	- 영유아 1인당 건물 연면적은 7~8㎡이상 ※ 법정 최소 면적기준 1인당 건물연면적 4.29㎡, 보육실 면적 2.64㎡
문	의무	- 보육실 출입문은 미닫이문 설치 - 모든 문은 모서리 끼임방지용 완충재 및 조망창 설치 - 외부 출입문은 외부의 캐노피 설치 - 방화문(FSD 또는 SD) 설치 시 상하좌우 문틀·문의 색상을 일체화 하고 현장 시공시 감독 철저
	권장	- 보육실 출입문 외의 문 미닫이문 설치 권장 - 공간인지성 향상을 위한 문디자인을 적용
창문	의무	- 환기용 창문은 바닥에서 1,200mm이상 높이 설치
	권장	- 조망용 창문은 하부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500mm 내외 - 채광용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약 800mm 이상 (창문 하부 2단 장식장 설치 시 장식장 높이 고려하여 계획)
조명	의무	- 눈부심이 없는 조명 방식 및 조명 기구 계획 - 기본색상은 주광색은 지양하고, 백색 또는 전구색의 혼용 설치 (색온도 4,500kelvin이하, LED 백색)
	권장	- 모든 조명은 직접광원이 아닌 간접광원과 덮개를 씌운 조명을 권장 - 인공조명에 의한 조도는 250Lux 이상 계획
전기설비	의무	- 스위치, 전기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은 바닥에서 1,500mm이상의 높이에 설치 - 청소, 공기청정기, 기자재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하단에 전기 콘센트를 설치할 경우 안전장치 설치
냉·난방	의무	- 에어컨은 냉·난방 겸용으로 천장매립형으로 설치 - 난방은 중앙집중식 바닥 난방을 원칙으로 전기패널 바닥난방은 지양하고, 가스·전기보일러를 설치 - 각 실마다 온도조절기 부착
	권장	- 온수용량 및 성능을 고려하여 보일러 외에 전기온수기 설치여부 검토
층간소음	의무	- 규모가 2층 이상인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을 차단 구조기준을 적용

비상대피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li> <li>- 1층에 부출입구, 외부 출입문(현관 주출입문 외) 등을 설치하여 비상대피용 피난출구 2방향 피난탈출로 확보</li> <li>- 구조대 설치 시 발코니 또는 실구획을 우선 고려하고, 실내에 설치 시 구조대로 인한 안전성 및 미관 고려</li> </ul>
	권장	- 바닥, 벽을 활용하여 비상문 연결로 인지성 강화 및 표식
기 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치, 냉난방조절기, 콘센트, 통신장비 등 벽부에 설치하는 설비시설의 경우 인테리어 도면의 벽면 전개도에 미관을 고려하여 위치 및 형태 표현</li> <li>-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시공업체와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다름에 따라 전기, 통신 기계, 소방업체가 인테리어 도면의 위치를 숙지하고 배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골조공사 착수 전 시공사에 요청</li> <li>- 감리원이 관리·감독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li> </ul>

#### 나. 출입공간

구분		세 부 내 용	
외부	주차공간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안전을 고려하여 영유아 일상적 활동공간과 격리된 영역 배치</li> <li>- 주차 진입로 및 주차구획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행동선과 분리</li> <li>-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 계획 시 차량 하차지점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li> </ul>
	투시형 울타리	의무 권장	- 대지의 외곽에는 식재 활용 또는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 ※ 설치 방법 및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본설계 시 반영
	야간 안전조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보안을 위해 출입공간 전면에 LED14W이상 전면 조명 설치</li> <li>- 야간보안을 위한 조명 설치 시 확산조명 설치</li> </ul>
		권장	- 옥외보안등 설치
	주출입구	의무	- 주출입구(현관) 전면 공간을 확보하고,상부의 캐노피가림막 등을 설치
권장		- 유모차, 휠체어, 키보드 등의 보관 공간을 마련	
내부	현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 가구(신발장)는 아동용, 교사용, 방문자용 신발 보관과 우산꽂이, 우의걸이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li> <li>- 안심존(세면대, 체온측정, 소독 등) 설치 검토 제안</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지대응 및 온열환경 조성을 위한 에어커튼 설치 검토</li> <li>-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재료 선정</li> </ul>
공통		의무	- BF인증에 따라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내외부 무단차 계획 시 트렌치 설치, 구배, 경사로 등의 내부로의 우수유입 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도면에 반영하여야 함

#### 다. 화장실 및 위생공간

구분	세 부 내 용	
화장실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은 보육실에 연결하여 배치</li> <li>-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li> <li>-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li> <li>- 장애인 화장실은 교사, 학부모, 방문자 등의 성인용 화장실 사용 등 다목적용 고려하여 1층 출입구에 근접하게 배치</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용변 세정을 위한 샤워기 설치 및 청소도구 세척공간 및 수전 설치 고려</li> </ul>
변기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기의 수량은 유아10명당 1개를 기준으로 수세식 아동용 양변기 설치</li> <li>- 화장실 좌변기 높이는 250~320mm로 계획</li> <li>- 좌변기와 소변기의 비율 설정시에는 5:3비율로 설치</li> <li>- 변기칸막이는 교사관찰이 가능하도록 900~1,000mm로 계획</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세 이상의 영유아화장실은 칸막이(큐비클) 설치 권장</li> </ul>
세면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면대 수전은 세면대 상부 앞으로부터 최대 500mm이내</li> <li>- 세면대 및 설비공간의 하부는 영유아가 들어갈 수 없도록 계획</li> <li>- 수전은 일정온도 유지가능한 수전 또는 온도조절장치(온수스토퍼) 설치</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세면대에는 영유아 눈높이의 거울 설치와 물품수납(칫솔소독기, 양치컵, 수건 등)장 등을 계획</li> </ul>

#### 라. 보육실

구분	세 부 내 용	
공통사항	의무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1인당 보육실(유희실 제외) 면적은 2.64㎡이상</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의 보육실을 1개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보육실 및 가변형 공간 검토 및 제안</li> <li>- 보육실은 가능한 남쪽에 배치하고, 자연채광이 통풍이 용이하게 계획</li> <li>- 안전을 고려한 바닥재 사용</li> <li>- 보육실 내 불박이장 계획 시 교사의 개인사물함 등을 고려</li> <li>- 보육실 내 불박이장 계획 시 연령별 보육실에 적합하도록 사물함(가방,외투,수납), 이불보관, 수납장 등을 고려하여 계획</li> <li>- 복도에 면한 벽면은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시창을 설치</li> </ul>

0세 ~ 1세 보육실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li> <li>· 0세 보육실은 만 12개월 미만 수유 및 이유기 영아로 아동 발육 상태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보육공간임</li> <li>· 1세 보육실은 걸음마기 영아에 대한 보육활동으로 대소변가리기, 옷벗고 입기, 이닦기 등 기본생활 습관을 기르는 과정을 지원하는 보육공간임</li> <li>- 0세 보육실은 원장실에 접하고, 소음이 없는 공간에 우선 배치</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 가구 위치 선정 및 계획 시 기본활동(기저귀갈이, 조유)과 설치비품, 낮잠영역의 분리를 고려</li> <li>- 0~1세 보육실은 기저귀갈이 등을 위한 세면대(싱크대) 설치</li> <li>- 기저기 갈이대는 하부수납형, 반좌식(400mm), 입식(800mm) 방식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택 설치(세부 디자인을 제안하고 가구도면에 반영)</li> <li>- 기저기갈이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턱(150mm) 설치</li> </ul>
2세 보육실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li> <li>· 2세 보육실은 생활습관을 습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을 지원</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세 보육실과 연결된 화장실은 노출된 형태의 변기와 세면대 설치</li> </ul>
유희실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둥이나 돌출된 형태의 구조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 바닥면에서 1200mm높이까지 안전완충재(매트)를 설치</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실내 활동을 고려하여 충분한 넓이를 확보</li> <li>- 발표회, 부모모임 등이 가능하도록 가변성, 융통성 높은 공간 계획</li> <li>- 유희실과 실외놀이터의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위치 권장</li> <li>- 주출입구에서 보이는 위치에 넓은 홀로 구성 권장</li> </ul>

#### 마. 원장실, 교사/교구보관실

구분	세 부 내 용	
공통사항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실은 주출입구에 직접면한 위치하고 시창 설치</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실은 학부모 상담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li> <li>- 교사실은 보육실과 가깝게 위치하고, 사무·연구·회의 기능 고려</li> <li>- 교사실 계획시 소규모 탕비시설 및 휴게공간 등을 고려</li> <li>- 규모에 따라 양호실을 별도 설치시 교사실과 인접하게 계획</li> </ul>
교구보관실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구보관실은 교사실 내에 설치하거나 인접한 위치에 계획</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구보관실은 교구소독기, 수납 등을 고려하여 10㎡이상 계획하고, 무빙 랙 등의 수납설비 설치를 권장</li> </ul>



바. 복도/계단 및 실외놀이터

구분	세 부 내 용	
복도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바닥면적 500㎡미만 1.5m이상, 500~1,000㎡미만 1.8m이상, 1,000㎡이상 2.4m이상 확보)</li> <li>- 계획 시 복도의 가구, 책장, 게시판, 휴게용 의자, 시창 설치 등을 고려하고, 설치 가구를 제외한 유효 폭이 법적 기준 이상이 되도록 계획</li> <li>※ 복도의 가구 및 프로그램 계획 시 통행에 장애 및 위험요소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도는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곡선형 통로를 지양</li> </ul>
계단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단 난간 설치후 유효폭 1,200mm이상 확보</li> <li>- 계단 단높이 150mm이하, 단너비 260mm이상</li> <li>- 영·유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50mm이상 설치하고, 이를 고려한 바닥 재료 제안</li> <li>※ 계단형 앉음의자 계획시 직각모서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마감 시 안전매트 마감 고려</li> <li>- 계단 손잡이는 성인용과 영·유아용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영·유아용 손잡이는 600~650mm 높이에 설치</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시형 난간 계획 시 수직살은 80mm 이내 계획</li> </ul>
놀이터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놀이터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li> <li>- 보육실, 유희실과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실내·외 이동 시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제안</li> <li>- 외부 활동의 손씻기 등이 가능한 수전 설치</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터 그늘 조성 및 실외 놀이기구 보관 창고 설치 검토</li> </ul>

사. 기타 시설계획 및 유의사항

구분	세 부 내 용
설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시설 및 설계 내역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항목 제시</li> <li>- 분야별 설비 시스템 및 장비일람은 기본설계 보고 시 제안하고, 설계내역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li> <li>- 외부 방송장비 설치 시 위치는 비와 눈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li> <li>- 건물 외부 바닥 마감 계획은 공간별 성격에 부합하여야 하며, 지반 상태를 고려하고 우수 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계획</li> <li>- CCTV 및 인터폰 설비 공사 범위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획하고, 추후 설계 변경이 없도록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의 경우 렌트 또는 보안업체를 통해 설치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협의 필요</li> <li>※ 발주처가 별도 설치할 경우 설치 위치 및 배관 도면 및 설계내역 작성 후 설계내역서에서 CCTV 장비만 제외</li> </ul> </li> <li>- 1M이하의 구조물(숨집, 계단하부 등) 계획 시 구조물 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도면 반영</li> <li>- 전동 롤스크린 설치 시 전동스위치와 전등스위치와 회로 분리</li> </ul>
기타 공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수공사는 비노출방식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노출방식 설계 제안 시 검증된 공법 적용</li> <li>- 실내외 계단하부 걸레받이 설계</li> <li>- 불박이장, 설치 수납장 설계시 콘센트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li> </ul>

### Ⅲ. 서 식

- [서식 01]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 [서식 0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서식 03] 대표자 선임계
- [서식 0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서식 05] 청렴 서약서
- [서식 06] 위임장
- [서식 07] 건축개요
- [서식 08]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 [서식 09] 관련 법규 검토서
- [서식 10]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내역서
- [서식 11]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서식 12] 보안각서
- [서식 13]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 PIN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생 년 월 일	
	e - m a i l		전 화 번 호 (FAX)	
	주 소			
공 동 응 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생 년 월 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p>서대문구에서 주최하는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모안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                          (인)</p> <p><b>서대문구청장 귀하</b></p> <p>※ 공동수급응모 시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 [서식2. 설계공모 참여자명단]에 별도 기재</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공모안 10부</li> <li>2. USB 1SET</li> <li>3.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봉투 1매</li> </ol>				

-----㉞----- 절 취 선 -----㉞-----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공모안 접수증				
※ PIN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접 수 일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제 출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24.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붙임 대표자 선임계(공동수급용) 1부.

### 서대문구청장 귀하

## 대 표 자 선 임 계

<한 설계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홍제·  
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  
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두 업체 이상의 공동수급인 경우>

본인은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한 설계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성명 : ○○○ (인)

“이하” 연서

<두 업체 이상의 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자) 업체명 : ○○○○○○○○

성 명 : ○○○ (인)

(공동응모자) 업체명 : ○○○○○○○○

성 명 : ○○○ (인)

“이하” 연서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처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처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처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 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 ○ ○ (인)

○ ○ ○ (인)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 청 렬 서 약 서

### □ 건 명 : 흥제·흥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

본인은 『흥제·흥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자)로서 위 설계공모의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설계공모 심사위원(후보)과는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개별면담은 물론 전화 통화 등 어떠한 사전접촉도 금지 하겠으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설계공모 심사과정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공모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 하겠으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본 업체의 임직원이 위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타 사의 설계공모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명단, 기피인물 신고,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 발주기관에 신고한 내용은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무고 등(명예훼손)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불이익 처분은 물론 민·형사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은 물론 공모 당선을 취소하여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모참여 대표업체      성 명 :    ○ ○ ○ (인)

(공동응모)참여업체      성 명 :    ○ ○ ○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서식 07]

# 1. 건축개요

항 목		설 계 내 용		비 고	
건 물 개 요	건 물 명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도 로 현 황				
	용 도			건축법상 용도	
	대 지 면 적			m <sup>2</sup>	
	연 면 적			m <sup>2</sup> 기준연면적의 %	
	지 상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건 축 면 적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건 폐 율			%	법정 : % 이하
				%	법정 : % 이하
	용 적 률			%	법정 : % 이하
		%	법정 : % 이하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주요외장재					
조 경 개 요				계획 및 법정 조경면적 근거 제시	
주 차 개 요				계획 및 법정 주차대수 근거 제시	
주 요 설 비 개 요					
기 타					

[서식 8]

## 2.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m <sup>2</sup>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9]

### 3. 관련 법규 검토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산정식포함)	비 고

[서식 10]

### 4.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내역서

□ 공 사 명 :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단위 : 천원)

구분	공 종 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m <sup>2</sup> 당 금액	구성비(%)
건축공사	소 계						
	가설/철거공사						
	골조공사 (보수보강 포함)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 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소방포함)							
전기설비공사(소방포함)							
정보통신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기타(기반시설 등)							
합 계							
제경비(25%이상)							
부가가치세(10%)							
총 공사비							





# 보안각서

본 기관(또는 인)은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소속기관명	부서	성명	서명
	대표업체			(서명)
	공동참여업체			(서명)

2024년 월 일

## 서대문구청장 귀하

##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 사 업 명 :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

본인은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 참가자로서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사전접촉 금지 서약 사항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위원과 사전접촉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